▌연구논문 ▌국제이해교육연구 10(2): 77-99(2015)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난민문제를 통해서 본 세계시민교육의 과제에 대한 고찰*

박순용**

요약

21세기 국제사회의 예상과는 달리 오늘날 난민의 숫자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난민문제는 우리 인류의 건강상태와 장기적 생존가능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하나의 불안한 지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위기상황을 세계시민교육 차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또 무엇을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논문에서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역할을 상기시키고 교육적 관점에서 지구촌의 난제 중 하나인 난민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난민실태와 난민에 대한 처우를 살펴보고 이어서 난민문제라는 전지구적 과제를 세계시민교육이 어떻게 담아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찰로 논의를 이어 가겠다.

주제어 : 세계시민교육, 난민, 난민교육, 유엔난민기구

* 이 논문은 제16차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paks@yonsei.ac.kr

Ⅰ. 서론: 난민문제와 위기의식

21세기에 진입하며 국제사회가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로 난민의 수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시리아 사태와 지중해의 보트피플 등 난민들의 참상이 나날이 각종 영상매체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 생과 사의 기로에서 최후의 선택으로 조각배에 가족을 싣고 망망대해로 떠나야하는 난민들의 심정은 가히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실제로 유럽 각국의 국경으로 몰려드는 난민들은 저마다의 고통스러운 여정을 뒤로한 채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자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와 같은 난민의 수는 기하급수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제는 난민 발생의 지역적 분포도 다양하다. 2014년에는 시리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이 발생하여 그 전해 가장 많았던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수에서 추월했다. 또 이라크, 예멘, 부룬디, 남수단 등 최근의 분쟁지역 뿐만 아니라 인종적, 종교적 박해에 따른 다양한 지역에서의 난민이 발생하는 등 그 원인도 다양하다. 이처럼 난민의 형태는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계적인 공동대응방식과 해결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난민의 문제는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인류 모두의 시급한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에 따르면 2013년을 기점으로 51,200,000 명의 난민이 전세계적으로 집계되었으며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불과 일 년만인 2014년에는 59,500,000명의 난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올해 전 세계 난민 인구는 총 6천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14년 한 해 동안에만 1,390만 명의 새로운 난민이 발생했다(UNHCR, 2014). 결과적으로 2015년의 난민의 수치는 2차 대전 이후 가장 높다(조선일보, 2015).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난민 인구는 국지적 분쟁과 전쟁, 테러, 정치적 탄압, 환경파괴의 증가로 인해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 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불안한 예상이 점차 현실로 드러날 경우 인류는 역사상 유례없는 최악의 난민 상황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유엔난민기구의 António Guterres 최고 대표는 지난 10월 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난민기구 집행위원회 연설을 통해 "10여 년 전에는 난민의 수가 3천 8백만 명이었고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었으나, 현재는 난민 인구가 6천만 명을 넘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회의에서 제시된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인 일일 난민 인구 증가는 2010년의 약 1만 1천 명에서 2014년에는 4만 5천 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2015). 이는 주로 분쟁지역인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대륙 곳곳에서 난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기인한다. 이와 같이 난민이 줄어들기는커녕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지구상의 정치적, 경제적, 환경적 상황이 기대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의 방증이다.

난민 문제는 우리 인류의 장기적 생존가능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하나의 불안한 지표를 극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위기상황을 세계시민교육 차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또 무엇을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함은 자명하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세계시민성에 대한 정의와 세계시민교육의 역할을 상기시키며 교육적 관점에서 지구촌의 난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이어서 난민문제라는 전지구적 과제를 세계시민교육이 어떻게 담아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찰로 논의를 이어 가겠다.

Ⅱ. 난민에 대한 정의와 선행연구

1. 난민에 대한 정의

그동안 국제사회는 난민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보호를 위해 국제협약과 의정서를 발전시켜왔다. 이를 통해 난민에 대한 개념을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난민을 지원할 수 있는 국제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그 대표적 문서가 1951년 채택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과 1967년 채택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이다. 즉 이 문서에 따라 난민은 무엇이고 누구인가가 정의된다.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서의 국제법상 난민의 자격요건에 따르면 난민은 '박해(persecution)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fear)'로부터 벗어나려는 자로서 이는 난민의 성격을 결정짓는 주요 요건이 된다. 여기서 '박해'란 난민협약에 의거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집단의 구성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생명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난민협약은 난민을 '난민지위 신청일 현재 자신

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자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 때문에 그 국가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적을 가진 자가 전쟁, 분쟁, 소요사태 등으로 자국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과 더불어 박해로 인해 정부로부터 보호받기를 거부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무국적자의 경우 역시 이러한 사건으로 자신의 상주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경우 국제법은 난민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박해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객관적 요건'이 전제되어야 함과 동시에 당사자가 그러한 요건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국제협약에서 난민에 대한 정의는 1951년도에 채택된 만큼 오늘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그 범위에 있어서 환경파괴나 사회경제적 빈곤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난민에 대해서 국제법상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난민에 대한 규정은 난민의 자격요건을 너무 제한적이고 협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유엔난민기구는 난민을 광의적으로 실향민, 환경난민 등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들로 규정하고 있다(UNHCR, 2013). 이러한 가운데 비정치적 난민, 특히 환경난민은 그 정의와 유형이 모호하여 국제법상 난민으로 포함시킬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이신화, 2015: 228). 또한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의 규정요건의 표현과 번역에 있어서도 논란이 있다.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라는 요건에서 '충분한'이 어느 정도의 공포를 나타내는지 알 수

없는 추상적 표현이라 그 범위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주고 있으며 따라서 '충분한' 보다는 '합리적인'이라는 표현이 난민협약규정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해석으로 보인다(박진숙, 전혜정, 2009).

2. 난민에 대한 선행연구

그동안 국제적으로 난민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로 많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에 영향력 있는 학술연구가 다수 발표되었고 난민의 출신국이나 수용국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난민에 대한 이해와 정책이 이루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 난민에 대한 연구는 이 기간 동안 발표된 주요 논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난민의 정신건강을 다루는 연구, 난민에 대한 인식과 난민 스스로의 정체성을 다루는 연구, 난민의 새 터전에서의 문화적응 문제를 다루는 연구, 그리고 난민의 학업과 진로문제를 다루는 연구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우선 정신건강 관점에서 난민문제를 다룬 연구들(Bernak & Timm, 1994; Berthold, 1999; Khawaia et al, 2008; Moreno & Gibbons, 2002; Pumariega, Rothe, & Pumariega, 2005; Rousseau & Drapeau, 2003; Terheggen, Stroebe, & Kleber, 2001; Yakushko, Watson, & Thompson, 2008; Ying, 2001)이 심리학, 상담학, 간호학, 등의 분야에서 발표되었는데 실제로 난민들이 경험하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양상을 다루고 치유를 위한 제언을 주로 하고 있다. 정신건강의 관점에서 난민의 갑작스러운 이동의 경험은 정서적, 영적, 물리적 단절로 인한 정신적 외상을 대부분 동반한다. 특히 난민은 일반적으로 그 발생 과정에서 심각한 차별, 폭력, 협박, 고문 또는 성폭력 등의 박해를 경

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외상들이 일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당기간 동안 반복되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난민으로서의 경험 가운데 종종 복합 외상(complex trauma)이 반복적·지속적으로 행해지면서(repeated, chronic) 대인적 폭력(interpersonal violence)의 성격을 띠게 되는 외상적 상황(traumatic situation)에 노출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이러한 특성상 난민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나 우울증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심리적으로 몹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위 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난민과 난민신청자들은 PTSD 또는 우울증을 겪는 심리적 취약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부적응으로 인해 더욱 심리적으로 취약해지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난민에 대한 인식과 난민 정체성에 관련된 연구들(Anderson, 2001; Bash, 2005; Esses et al, 2008; Eth, 1992)이 있는데 주로 수용국의 난민에 대한 태도와 난민들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과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후자의 경우 이주과정에서의 갈등과 무기력함이 심각한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지는 양상이 상술되고 있다. 난민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속해 있던 공동체에서의 지위, 역할, 소속감 등 집단정체성과 개인정체성이 근본부터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 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인적(人的) 네트워크의 상실로 인해 집단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의미해지고, 초라한 개인의 모습으로 전락한 자신의 상태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게 된다. 이 가운데 난민이라는 신분이 주어지고 타지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해나가야 하는 불안한 일상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관련연구들이 보여주고 있다.

셋째, 난민의 새 터전으로의 진입 이후 문화적응의 문제를 다룬 연구들(Ager & Strang, 2008; Birman, Trickett, and Vinokurov, 2002; Johnson, 2003; Maegusuku-Hewett et al, 2007; Merali, 2004, 2005; Nawyn, 2006; Qin et al, 2015)이 있다. 난민은 이주노동자나 이민자 등 여타 이주민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수한 이주의 경험을 갖기 때문에 문화충격이 더욱 심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난민들의 이주의 특징은 첫째, 준비 없는 돌발성, 둘째, 본국귀환에 대한 불확실성, 셋째, 자원의 고갈상태에서 새로운 환경으로의 진입이다(Anderson, 2004). 따라서 이주를 위한 심리적인 준비나 사전의 대비가 없었던 만큼 이들은 문화적 충격에 훨씬 더 취약할 수 있다. 실제로 난민들은 새로운 정착지에서 문화적인 갈등과 가난, 인종차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며 심지어는 인신매매, 범죄, 성매매의 대상으로 쉽게 전락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난민들의 문화적 부적응은 난민지위의 인정 자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심사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수치심이나 체면 등 문화적인 이유로 자신이 경험한 박해에 대해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거나 통역 상의 오류나 문화차이로 인한 진술의 곡해 또한 난민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이다.

넷째, 난민의 교육문제를 다루는 연구들(Crea & McFarland, 2015; Goodkind, 2005, 2006; Hannah, 1999; Keddie, 2012; Lin, Suyemoto, and Kiang, 2009; Matthews, 2008; McBrien, 2005; Morrice, 2009; Naidoo, 2008; Yakushko et al, 2008)이 있는데 주로 학업 및 진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수용국에서의 체류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 필요에 의해서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의지를 보이는 난민과 이들을

도와줄 교육적 환경이 어떠한지에 대한 사회적 성찰을 요하는 접근이 주목된다. 위 논문들은 난민의 직업교육·재교육을 통한 자력갱생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한 편 난민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학교교육을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주경로와 학습공백, 이주 전 학력, 이주 후 학교교육과 학교문화와의 갈등문제 등이 주 관심사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난민의 이주 및 정착경험과 수용국의 제도적·문화적 기반을 교차시켜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물들이다. 그런데 이 연구들은 대부분 특정 국가에서의 난민 수용상황과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한정지었기 때문에,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세계적인 난민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세계시민교육은 이러한 지역별 사례를 참고하여 세계시민성에 근간을 둔 난민문제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지향점을 모색하는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Ⅲ. 우리나라에서의 난민문제

우리나라는 멀지않은 과거에 6.25전쟁으로 인해 대량의 난민이 발생된 비극적인 전례를 갖고 있는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낮고 국제 난민문제에 대해 둔감할 정도로 제도권 교육에서 이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지 않다.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들은 우리 안의 난민에 대해서 대부분 무관심하거나 무지하다.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무관심과 제도적 난관 속에서 불

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난민들은 우리 사회와 문화가 갖고 있는 구조적 배타성의 직·간접적인 피해자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인 난민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시발점은 1975년 4월 베트남 전쟁에서 월남이 패망한 전후 탈출한 보트피플의 참상이 소개되면서 부터이다. 특히 이들 베트남 난민들은 당시 사회·문화적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한국을 거쳐 제3국으로 보내지면서 난민문제에 대해 한국인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후 한국은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1992년에 이르러서야 가입을 하였다. 한국 사회에도 난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냉전체제의 붕괴이후 급격히 늘어난 지역분쟁 가운데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언론을 통해 소개되면서 난민상황은 더 이상 낯선 문제가 아니지만 여전히 많은 한국인들의 관심사 밖에 놓여있었다. 그동안 난민 신청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한국 정부는 2001년에서야 첫 난민을 인정했을 정도로 난민에 대해 배타적이고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볼 수 있다(오마이뉴스, 2015).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 또한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2011년 이후 난민신청자 수가 매년 1,000명을 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작년에는 2,896명에 이르렀다(법무부 난민과, 2015). 또한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들의 출신지역은 아시아 외에도 중동과 아프리카 등 30여 개국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 난민과, 2015). 이는 난민들이 지리적 접근성과 관계없이 다양한 지역과 국가에서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2000년대 이후 난민의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며 우리사회에 난민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많은 일반 이주

외국인들의 입국으로 인해 지금도 난민의 존재감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즉 이주민 안에서도 소수자로서 다문화 사회의 담론에 매몰되고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난민문제가 한국사회에서 공식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것은 2001년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사무소가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개소되었을 때로 볼 수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한국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난민 인정 절차가 확립되고, 세계 난민 문제와 대한민국 내의 난민 문제에 관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주무부처인 법무부, 외교통상부 이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 법원 통일부를 비롯해 관련 정부부처와 학계, 시민단체들과 함께 노력해 왔다. 유엔난민기구 한국사무소는 2006년 7월에 지역사무소로써 독자적인 한국 대표부 지위를 가지도록 승격되어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민사회영역에서도 난민문제 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난민운동 단체인 사단법인 피난처는 1999년 창립되어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탈북난민 지원 사업을 시작해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난민들에 대한 지원과 이들을 위한 학교운영 및 난민지위 인정을 위한 입증지원활동 등의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난민을 위한 법률지원을 하고 있으며 난민의 법적상담과 정착을 위한 지원활동을 하는 비정부기구로 난민인권센터-난센(NANCEN)이 있다. 그 밖에 난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난민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수공예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사회적기업인 에코팜므(EcoFemme) 등이 있다.

2015년 9월 기준으로 1994년 이후 우리나라에 난민신청을 한 총인원은 13,310명이며 이 가운데 인정자는 526명, 인도적 체류자는 889

명이다(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5.9). 이처럼 우리나라는 현재까지의 난민신청자 대비 난민지위 인정율이 5%에도 못 미칠 정도로 극소수만이 난민으로서 인정을 받는 실정이다. 한국의 난민인정 제도의 문제점으로 난민인정 심사기간의 장기화와 동기간 동안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나 경제적 지원책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난민신청자들은 난민신청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상태에서도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된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 내에서 난민문제를 심의하고 다룰 전문가가 없는 점과 더불어 한국 난민제도에서 드러나는 난민에 대한 입장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난민 신청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아온 미국・캐나다・독일・호주에서는 난민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난민인정 절차부터 가짜 난민을 색출해내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해 처벌하거나 추방조치를 한다는 방침에 입각한 난민정책을 펼치고 있다. 불법체류 문제를 담당하는 출입국 관리부서가 난민 인정절차를 담당한다는 점과 극히 낮은 난민지위 인정률이 이러한 정책적 경향을 뒷받침한다. 난민보호제도가 잘 갖추어진 외국의 경우 난민신청 단계에서는 물론이고 관계 공무원과의 면담을 비롯한 사실조사 과정, 난민이 되고 난 이후에 사회에 적응하는 단계에서도 세심한 심리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이 병행되거나 선행되는 경우가 많다(Canadian Council for Refugees, 2014).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심리적 취약성의 문제는 난민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과제로 간주되어 왔다. 난민지위인정절차에서 난민의 심리적 취약성에 대한 대책은커녕 이해와 배려조차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난민신청자와 인정자에 대한 사회문화적으로 부정적인 태

도와 제도적 한계는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어 국내거주 난민신청자들의 삶을 버겁게 하고 있다(박순용, 서정기, 2014). 난민 신청자 자격을 얻더라도 이들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거나 취업을 할 수도 없는 만큼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안한 일상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그동안 국내에서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리검사와 심리상담을 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 모두에게 생존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상실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임이 발견된다. 특히 난민이 되어 이주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본국에서의 박해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안정망 외에 사회적 유대(social bond)의 형성이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정착을 돕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 사람을 사귀고 있거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난민이 정착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욤비 토나, 박진숙, 2013). 즉 국내에 존재하는 국가별 공동체와 동료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을 때 도움이 된다.

최근 지구촌 곳곳의 난민캠프의 비극이나 지중해 상의 난민선 침몰 등의 참상을 각종 매체를 통해 접하며 그 심각성을 우려하면서도 한국사회는 정작 대한민국의 보호를 요청하며 입국한 난민들의 문제를 그다지 절박하게 다루지 않아왔다. 유럽처럼 난민의 유입이 대량으로 발생하지도 않았거니와 사회적 쟁점으로 다루어질 만큼 주요 관심사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인권 차원에서 난민의 수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와 압력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한국사회의 난

민의 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가 한 나라의 국격(國格)을 논할 때 경제력이나 군사력과 같이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순위를 매기는 방식 보다는 국경 안의 약자와 소외자가 어떠한 보호를 받는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난민에 대한 보호는 주권국가의 품격을 반영한다. 난민은 새로운 환경과 불안정한 법적 지위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는 우리사회의 보호대상이다. 따라서 난민이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삶의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실태분석을 통해 난민의 상황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세계 각국의 난민정책과 지원에 대한 비교연구를 참고하여 한국의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의 이주난민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난민문제를 세계시민교육에서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세계시민교육에서 난민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자성(自省)과 고민은 지구촌 시대의 우리 인류의 현주소를 돌아보는 중차대한 과제이다. 지구상의 국지적 분쟁과 정치・경제・종교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은 대량의 난민을 오늘도 발생시키고 있다. 난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자체가 21세기 지구촌의 열악한 생존환경을 가감 없이 웅변한다. 무엇보다 난민문제는 인류의 장기적인 생존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던져 준다. 살던

곳으로 부터 이주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실에 대응하여 이들의 고초를 덜어주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여부는 전반적인 인류의 건강상태에 대한 시금석의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 역시 난민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에 대한 숙고가 요구된다. 우선 세계시민교육이 전반적인 사회적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교육적 가치의 구현이라는 전제하에, 난민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세계시민성이 발현될 수 있는 교육적 여건을 조성하는 과정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세계시민성이란 궁극적으로 보편적인 인간적 이상을 지향하며 지구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견 없이 다루고자 하는 환경적 책무, 사회정의, 경제적 공영 등을 실현하기 위한 마음가짐이다. 세계시민성에 입각하여 난민문제를 바라보는 세계시민교육의 과제를 살펴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난민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마치 다른 사람의 불행을 방관자적 입장에서 바라만 보는 것처럼 안일한 태도를 고수한다면 결국 모두의 불행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에 민감하도록 세계시민교육이 이 문제를 가감 없이 다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난민의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근·현대사를 난민문제의 시각에서 본다면 강제이주민이나 실향민의 사례로 점철되어 있다.

둘째, 세계시민교육은 난민들이 겪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문제들을 단순화시키지 말고 여러 가지 상황과 목소리를 담아내어 다각도로 이해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출신국, 수용국, 이주과정, 이주이유, 성별, 나이 등에 따라 난민의 경험은 개개인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난민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실태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다.

셋째, 난민문제는 정치경제적 논리로 다루기보다는 인류 보편적 인권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세계시민교육 속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담아내야 할 것이다. 난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총체적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존재로서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책임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UN은 난민협약을 통해 이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회원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의 비준국가로서 이들을 단순히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난민 정책에서 인권보호에 초점을 두는 적극적인 개념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동일한 맥락에서 세계시민교육은 난민의 실상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인권교육 차원에서 난민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교육적 지향점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넷째, 세계시민교육은 난민문제에 대한 접근과 해법의 모색 차원에서 의식주에 국한된 정책 지원을 넘어 이들이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과 다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는 동시에 난민이 생산되는 상황타개에 대한 논의를 장려해야 한다. 특히 세계시민교육은 난민문제가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당면한 시급한 문제임을 각인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각 지역의 난민 정책에 대한 보편적이고 실천적인 함의를 찾도록 하는데 있어서 구심점 역할을 해야겠다.

마지막으로, 세계시민교육은 난민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난민을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사회와 시민의 책임과 역할이

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시민성이란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는 정신 상태이기 때문이다. 사회가 난민들의 존재를 이해하고 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난민들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다. 난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의 개선은 사회의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통합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업이다.

Ⅴ. 결 론

21세기 지구촌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국경 간 이동 및 이주가 유래 없이 빈번하고 고립된 지역이 거의 없을 정도로 촘촘한 연결망으로 이어져 있다는 점이다. 지금은 지구상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즉각적이고 연쇄적으로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며 정보통신망을 타고 실시간으로 소식이 전해지는 시대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민 형태의 자발적이고 계획적인 이주와 달리 강제적이거나 타의적인 이주를 하게 되는 난민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난민인구가 이미 문제(problem)를 넘어서 사태(crisis)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데 대한 위기의식이 있다.

이러한 현실을 세계시민교육이 어떻게 담아내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세계시민교육이 교육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지향점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때이다. 세계시민교육은 상호 의존성의 관점에서 오늘날 지구촌 사회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하고, 이를 근간으로 주요 세

계 문제들의 성격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세계시민으로서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성찰하도록 유도한다면 세계시민성의 함양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시민교육에서 난민문제를 다루는 것은 무엇보다 폐쇄적 사고방식과 지역적 이기심의 파기를 전제로 해야 한다. 따라서 이상주의적 접근이나 상상된 연대감을 구심점으로 삼기 보다는 난민문제와 같은 구체적이고 불편한 지구촌의 현실에 눈뜨게 하고 세계시민적 책무의식이 발현되도록 하는 방향설정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지구촌사회가 난민문제를 비롯한 지구상의 난제들을 대면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세계시민교육에서 주창(主唱)하는 초국가적 책무의식을 모두가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참고문헌

박순용, 서정기(2014). 이주난민으로 살아가기에 대한 경험의 탐색: 콜라지의 분석방법에 기초한 현상학적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7(3). 103-132.

박진숙, 전혜정(2009). 난민 가정의 문화 정체성에 대한 문화기술지적 사례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1-31.

욤비 토나・박진숙(2013). **내 이름은 욤비: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서울: 도서출판 이후.

이신화(2015). 국제기구와 인도적 의제: 이주 및 난민 문제. **국제기구와 인권·난민・이주.** 박흥순, 서창록, 박재영, 이신화. 서울: 도서출판 오름. 195-231.

Anderson, A. Issues of migration. In Hamilton, Richard J. and Dennis Moore, eds.(2004). *Educational Interventions for Refugee Children.* pp. 64-82. London UK: RoutledgeFalmer.

Anderson, P.(2001). 'You Don't Belong Here in Germany...': On the Social Situation of Refugee Children in Germany. *Journal of Refugee Studies, 14*(2).

Ager, A. and Strang, A.(2008). Understanding Integration: A Conceptual Framework. *Journal of Refugee Studies, 21*(2).

Bash, L.(2005). Identity, Boundary and Schooling: Perspectives on th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Refugee Children. *Intercultural Education, 16*(4).

Bemak, F. & Timm, J.(1994). Case Study of an Adolescent Cambodian Refugee: A Clinical, Developmental and Cultural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ling, 17*(1). 47-58.

Berthold, S. M.(1999). The Effects of Exposure to Community Violence on Khmer Refugee Adolescent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2*(3).

Birman, D., Trickett, E. J. and Vinokurov, A.(2002).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of Soviet Jewish Refugee Adolescents: Predictors of Adjustment Across Life Domain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0*(5).

Crea, T. M. & McFarland, M.(2015). Higher Education for Refugees: Lessons from a 4-Year Pilot Project.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61*(2): 235-245.

Esses, V. M., Veenvliet, S., Hodson, G., and L. Mihic.(2008). Justice, Morality, and the Dehumanization of Refugees. *Social Justice Research, 21*(1). 4-25.

Eth, S.(1992). Ethical Challenges in the Treatment of Traumatized Refugee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5*(1). 103-110.

Goodkind, J. R.(2005). Effectiveness of a Community-Based Advocacy and Learning Program for Hmong Refuge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6*(3/4)

Goodkind, J. R.(2006). Promoting Hmong Refugees' Well-Being Through Mutual Learning: Valuing Knowledge, Culture, and Experienc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7*(1/2)

Hannah, J.(1999). Refugee Students an College and University: Improving Access and Support.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45*(2).

Johnson, Phyllis J.(2003). Financial Responsibility for the Family: The Case of Southeast Asian Refugees in Canada.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4(2). 121-142.

Keddie, A.(2012). Refugee Education and Justice Issues of Representation, Redistribution and Recognition. *Cambridge Journal of Education, 42*(2): 197-212.

Khawaia, N. G., White, K.M., Schweitzer, R., and J. Greenslade(2008). Difficulties and Coping Strategies of Sudanese Refugees: A Qualitative Approach. T*ranscultural Psychiatry, 45*(3).

Lin, N. J., Suyemoto, K. L., and P. N. Kiang(2009). Education as Catalyst for Intergenerational Refugee Family Communication About War and Trauma. *Communication Disorders Quarterly, 30*(4).

Maegusuku-Hewett, T., Dunkerley, D., Scourfield, J. and N. Smalley(2007). Refugee Children in Wales: Coping and Adaptation in the Face of Adversity. *Children and Society, 21*(4).

McBrien, J. Lynn(2005). Educational Needs and Barriers for Refugee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5*(3), 329-364.

Matthews, J.(2008). Schooling and Settlement: Refugee Education in Australia. *International Studies in Sociology of Education, 18*(1).

Merali, N.(2004). Individual Assimilation Status and Intergenerational Gaps in Hispanic Refugee Families.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ling, 26*(1). 21-32.

Merali, N.(2005). Perceived Experiences of Central American Refugees Who Favorably Judge the Family's Cultural Transition Process.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ling, 27*(3). 345-357.

Moreno, I. T. and Gibbons, J. L.(2002). Trauma Events, Residence in Refugee Camps, and Educational Attainment as Predictors of Trauma Symptoms of Albanian Refugees in Macedonia. *International Journal of Group Tensions, 31*(2). 155-174.

Morrice, L.(2009). Journeys into Higher Education: The Case of Refugees in the UK.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14*(6). 661-672.

Naidoo, L.(2008). Supporting African Refugees in Greater Western Sydney: A

Critical Ethnography of After-School Homework Tutoring Centres. *Educational Research for Policy and Practice, 7*(3). 139-150.

Nawyn, Stephanie J.(2006). Faith, Ethnicity, and Culture in Refugee Resettlemen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9*(11). 1509-1527.

Pumariega, A. J., Rothe, E., and J. B. Pumariega(2005). Mental Health of Immigrants and Refugee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41*(5).

Qin, D. B., Saltarelli, A., Rana, M., Bates, L., Lee, J. A., and D. J. Johnson(2015). "My Culture Helps Me Make Good Decisions": Cultural Adaptation of Sudanese Refugee Emerging Adul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30*(2). 213-243.

Rousseau, C. & Drapeau, A.(2003). Are Refugee Children an At-Risk Group? A Longitudinal Study of Cambodian Adolescents. *Journal of Refugee Studies, 16*(1). 67-81.

Terheggen, M. A., Stroebe, M. S., and R. J. Kleber.(2001). Western Conceptualizations and Eastern Experience: A Cross-Cultural Study of Traumatic Stress Reactions Among Tibetan Refugees in Indi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4*(2). 391-403.

Yakushko, O., Watson, M., and S. Thompson.(2008). Stress and Coping in the Lives of Recent Immigrants and Refugees: Considerations for Counseling.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ling, 30*(3). 167-178.

Yakushko, O., Backhaus, A., Watson, M., Ngaruiya, K., and J. Gonzalez.(2008). Career Development Concerns of Recent Immigrants and Refugee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4*(4). 362-396.

Ying, Y-W.(2001). Psychotherapy with Traumatized Southeast Asian Refugees.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29*(1).

<자료>

법무부 난민과.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 2015. 6. 24일자.

오마이뉴스. 난민법 만들고도 난민들 외면하는 한국(류은지). 2015. 9. 17

일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4382

조선일보. 한국인은 왜 난민에 관심 없는 건가요(이슬비). 2015. 6. 20일자. A2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Korea Immigration Service).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5년 9월호"

한겨레 21. '1호 난민'은 한국에 없다(김성환). 2013. 10. 7일자. 제980호.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5462.html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UN, "올해 전 세계 난민 인구는 6천만 명 이상"(김한주). 2015.10.6.일자. http://www.kimcoop.org/news/articleView.html?idxno=83512

Canadian Council for Refugees(CCR). Keeping the Door Open: NGOs and the new refugee claim process. 2014. 10.

UNHCR. Summary Conclusion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extended refugee definition in the 1984 Cartagena Declaration. 2013.10. http://www.unhcr.org/cgi-bin/texis/vtx/home/opendocPDFViewer.html?docid=53bd4d0c9&query=definition%20of%20refugee

UNHCR. Global Trends: Forced Displacement in 2014. http://www.unhcr.org/556725e69.html

Abstract

A Study on the Task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GCED) from the Perspective of Refugee Issues

Pak, Soon-Yong
(Yonsei University)

Despite expectations that the number of refugees would decrease over time as we entered the new millennium, the exact opposite has transpired in the past few years. The refugee crisis around the world serves as a stern warning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forces us to question the world's long-term survivability and well-being. This study looks into how and why Global Citizenship Education(GCED) should incorporate the refugee problem in today's world as an integral part of learning and practice.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analyzes the various aspects of the refugee issue as it pertains to GCED, and examines how we can expand the scope of the debate on the current refugee crisis in a global context. This paper will also highlight some of the refugee issues within Korea in order to put into perspective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GCED.

Key words : Global Citizenship Education(GCED), refugee, refugee education,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UNHCR)

투고신청일 : 2015. 10. 30
심사수정일 : 2015. 12. 10
게재확정일 : 2015. 12. 17